

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 검 수

2016년 5월 20일

1. 제안이유

주민생활국 및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보다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생활복지국과 복지정책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국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주민생활국”을 “생활복지국”으로 명칭 변경(제3조, 제7조제1항)
- 나.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명칭 변경(제7조제2항)
- 다. “주민생활지원과”를 “복지정책과”로 명칭 변경(제7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지방자치법 제112조
 - 2)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6. 2. 26. ~ 2016. 3. 7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(제외대상)

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1184호

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규정」 제13조”를 “규정」 제13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주민생활국”을 “생활복지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감사·민원조사·계약심사·환경순찰(생활민원)등을”을 “감사·민원조사·계약심사·환경순찰(생활민원) 등을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5호 중 “지방의회·동행정”을 “지방의회·동 행정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29호 중 “축산물위생·유통관리계획”을 “축산물 위생·유통관리계획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주민생활국에 두는 과)”를 “(생활복지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제7조제1항 중 “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지원과”를 “생활복지국에 복지정책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4호 중 “조정·연계사항”을 “조정·연계 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8호 중 “관한사항”을 “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5호 중 “위법·위험건축물”을 “위법·위험 건축물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20호 중 “관한사항”을 “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6호 중 “과태료고지”를 “과태료 고지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7조”를 “「지역보건법」 제7조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제3항에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제3항에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 등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의료·구호지원반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“주민생활지원과”를 “복지정책과”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⑨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, 제10조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, 제13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⑩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, 제6조제3항제2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, 제12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⑪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, 제33조제2

항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, 제38조제4항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⑫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6호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⑬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5호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⑮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4호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⑯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3호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⑱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⑲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가목 중 “주민생활국”을 “생활복지국”으로 한다.